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조정대상지역 내에 1주택(종전주택)을 보유한 세대가 이사·학업·취업·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조정대상지역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요건인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완화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시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(안 제28조의5제1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5. 31. ~ 6. 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관계기관 협의(2022. 5. 31. ~ 6. 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5제1항 중 “1년”을 “2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세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이 영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「지방세법」 제28조의5에 따른 종전 주택등(「주택법」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)을 소유한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022년 5월 10일 이후 해당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

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경우의 중과세 배제 요건에 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8조의5(일시적 2주택) ①	법	제28조의5(일시적 2주택) ①	----	
제13조의2제1항제2호에	따른		-----	
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			-----	
주택”이란 국내에 주택, 조합원			-----	
입주권,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			-----	
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			-----	
주택, 조합원입주권, 주택분양			-----	
권 또는 오피스텔(이하 이 조			-----	
및 제36조의3에서 “종전 주택			-----	
등”이라 한다)을 소유한 상태에			-----	
서 이사·학업·취업·직장이			-----	
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			-----	
1주택(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			-----	
에서 “신규 주택”이라 한다)을			-----	
추가로 취득한 후 3년(종전 주			-----	
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「주			-----	
택법」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			-----	
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			-----	
에는 <u>1년</u> 으로 한다. 이하 이 조			---- <u>2년</u> -----	
에서 “일시적 2주택 기간”이라			-----	
한다) 이내에 종전 주택등(신규			-----	
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			-----	
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			-----	
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			-----	

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 을 포함한다)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. ②·③ (생략)	-----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837